

제 호

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

시 설 명:

소재지:

시설의 종류:

설치자(법인은 대표자):

시설의 장:

입소(이용)정원:

구분	제공여부	정원
주·야간보호서비스		명
단기보호서비스		명
총 정원수		명

비고: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.

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6조, 제20조,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[인]

(뒤 쪽)

변 경 사 항		
일 자	내 용	기 록 자 (서명 또는 인)